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

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

제정 2016. 11. 24. 규정 제302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2제5항 및 「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의 개최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"란 「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8조에 따라 보건의료 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협의체를 말한다.
 - 2. "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(이하 "통합신고포털"이라 한다)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2제1항 및 「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·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.
 - 3. "정보시스템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3항 및 제4항,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4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- 4. "정보보유기관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보건복지부
 - 나.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)
 - 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
 - 라.「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
 - 마.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의 장(이하 "원 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기관
- 제3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보건의료자원 신고·관리 업무절차 및 제도 개선, 정보보유기관 간의 정보연계 강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, 자문, 실무 협조, 의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.
 - 1. 법·제도 정비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
 - 2.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, 방법, 절차,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
 - 3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4.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

- 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신고포털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,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.
 - 1.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
 - 2.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
 - 3. 원장이 정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
 - 4.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
 - 5.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치과협회,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 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
 - 6. 그 밖에 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
- ③ 위원의 임기는 추천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안건에 관련된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

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실무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대리인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.
-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의 간사에게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.
 - 1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
 - 2.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 천된 때
 - 3.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
 - 4.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제8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신고포털 설치·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2급 직원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협의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.
- 제9조(업무의 위임)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.
 - 1.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
 - 2.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안내 등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0조(관계자 의견 청취 등)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,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검 토할 수 있다.
- 제11조(비밀 유지 등 준수사항) ①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협의회 안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(2016.11.24.)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		청	검	서	약	서
서 약 인 인적사항	성명				생년월일	
	소속				직 위	

상기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(위촉)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직무상 습득한 자료 및 회의 내용·결과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 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- 2. 직무수행과 관련한 회의자료, 전산자료, 기타 서류 등 PC 또는 서면 등으로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겠습니다.
- 3.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,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·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.

20 . . .

서 약 인 (서명)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